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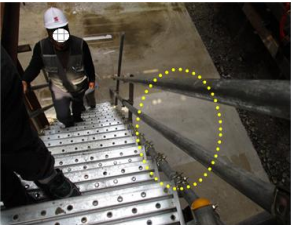

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〔별내선(8호선연장) 1공구 건설공사〕

- 점검일시 : 2019.08.08 (목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임시로 설치한 집수정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① 추락방지시설(난간 등) 설치</p> <p>② 발판 설치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8조(울타리의 설치)</p>		2019.08.12	
		<p>- 집수정 주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완료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굴착작업중인 3구간으로 출입하는 계단은 상부난간대가 낮으니(약 60cm)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</p>		2019.08.09	
		<p>- 계상 상부난간대 높이 조정 완료</p>	

<p>○ 중량물취급 안전</p> <p>- 시점부(1구간) 복공작업중으로 인양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토록 교육하기 바라며, 작업반경 하부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관리하기 바람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3(낙하재해예방 안전 시설 및 작업기준)</p>		<p>2019.08.12</p> <p>- 인양작업시 유도로프 사용하도록 근로자 교육 완료 - 작업반경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완료</p>	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3구간 굴착작업 중으로 사면 및 소단에 자재 등이 적치되어 낙하위험이 있으니 지면 등 낙하 위험이 없는 평평한 곳으로 이동조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(경사면에서의 중량물취급)</p>		<p>2019.08.09</p> <p>- 사면 및 소단 주변 자재 이동조치 완료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소화기는 장소에 따른 조건을 고려하여 화재 초기진압에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고, 게이지가 파손된 소화기는 즉시 교체 등 조치하기 바람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</p>		<p>2019.08.09</p> <p>- 소화기 교체 완료</p>	
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사용이 완료된 가스(산소,LPG)는 잔여가스를 제거한 후 보관하기 바람, 복공하부로 연결되는 호스는 날카로운 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</p>		<p>2019.08.09</p> <p>- 잔여가스 제거하여 보관 완료</p> <p>- 산소 및 LPG 호스 접촉부 보완 완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안전모보관소에 보관 중인 박리제 위험물보관소로 이동조치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보관소)</p>		<p>2019.08.14</p> <p>- 박리제 위험물 저장소로 이동조치 완료</p>	